

# 어린이 청소년 보호 헌장

Copyright © 2005, United State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Washington, D.C. 20017

## 서문

2002년도 이래 미국가톨릭교회는 금세기에 들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부제들과 사제들 그리고 주교들에 의해 저질러진 미성년자 성적학대(sexual abuse)와 이와 같은 범죄행위와 죄가 다루어진 과정은 엄청난 아픔과 분노와 혼돈을 야기시켰다. 우리 주교들은 그와 같은 고통이 발생한 데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며, 지난날 피해자들과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 주교들은 지금까지 신자들이 겪어온 아픔에 대해 진심 어린 슬픔과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헌장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투신할 것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 동안 성적학대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의 절규를 들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울음소리에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 성직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죄악과 불법행위 그리고 신뢰의 저버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는 성직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미성년자 성적학대 문제의 범위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현재 그 원인과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성적학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성년자 성적학대의 폐해는 너무나 파괴적이며 장기간 지속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해진 이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도울 것이다. 신자들의 신앙을 더욱 키워가도록 하는 거룩한 직무를 부여 받은 성직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신뢰의 상실이 신앙의 상실로 이어질 경우는 더욱 비극적이다. 우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어린이 성추행에 대해 하신 말씀을 빌어 우리의 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어린이 성추행은 근본적으로 사악한 것이며 사회에서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느님의 눈에도 끄떡한 죄악이다.” (미국가톨릭교회 추기경단과 주교회의 임원진들에게 하신 연설, 2002. 4. 23)

이번 스캔들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가톨릭공동체도 고통을 겪어왔다. 자신의 성소를 저버린 일부 성직자들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의 격렬한 공개적인 조사는 충실한 대부분의 사제와 부제들에게 자신들의 교역활동에서 오해를 받으며 전혀 속수무책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였으며 때로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는 경험도 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직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성직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 받은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과 모든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모두를 일치시키는 신뢰의 끈을 회복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말만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주교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각자 맡은 교구 안에서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시키는 임무”에 (2고린 5:18) 대해 각별한 책임을 느낀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도록 이끌 뿐 아니라 이번 스캔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하느님과 그리고 서로간의 화해를 호소하도록 이끌어 준다.

아마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죄의 힘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껴왔다. 그러나 바울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로부터 무죄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2고린 5:21)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죄를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화해의 은총을 통하여 하느님의 공정하심을 아울러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와 같은 깊은 상처 후에 치유와 화해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마태 19:26)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이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오면서, 우선적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신앙과 올바른 길 선택을 위한 분별력 안에 머무르게 해주시도록 의지해왔다.

우리는 이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는데 교황청으로부터 자애 깊은 지도와 협력을 받아왔다.

우리는 미국가톨릭교회의 신자들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전국적으로 또 교구차원에서 수 많은 성직자들과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 사태의 결과들을 받아 들이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밟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전문지식을 통해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관대함,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영적, 도덕적인 도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제와 부제들은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확신하며, 그들을 향한 신자들의 변함없는 사랑도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주교들의 존경과 그들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자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들이 투신한 증거의 삶이 퇴색된 점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별히 우리 주교들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줌으로써 신뢰의 파괴가 주는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보다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성직자 성적학대의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여러분의 주교인 우리에게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추행을 방지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본보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의심과 혼돈이 없도록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힘없는 이들을 끊임없이 보살피셨는지를 상기한다. 그분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 당신의 활동을 시작하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 4:18-19)

마태오 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보살핌을 어린이들에게도 베풀도록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오지 못하도록 나무라자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마태 19:14)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들을 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마태 18:6)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를 위한 예언적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우리 주교들은, 신뢰의 끈을 재생시키기 위한 확고한 투신과 함께, 성적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과 교회의 모든 이들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목적 배려에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지난 3년간 헌장의 원칙과 절차가 교회 전반에 걸쳐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The Office for Child and Youth Protection)은 미국 내 전 교회가 어린이들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접근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또한 보호국은 독자적으로 실시한 2개의 보호헌장 실행 감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우리가 헌장의 목적을 책임 있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전국평가위원회(National Review Board)는 교구의 헌장 실행 평가를 돕고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가톨릭교회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국평가위원회에 의해 의뢰된 미국 내 가톨릭 성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미성년자 성추행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연구조사가 완료되었다. 범죄학 전문대학 John Jay College에 의해 1950년부터 2002년 기간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그와 같은 부당행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 교구가 학대에 의해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필요한 사목적 배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자 지원 조정관(victims' assistance coordinator)들이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 주교들은 교구가 헌장준수를 위한 필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교구평가위원회(diocesan review board)의 자문과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 어린이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어린이 관련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안전 환경 프로그램(safe environment program)” 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비록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추행 문제의 정도가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해자들과 모든 교구는 계속해서 그 악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태의 영향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헌장을 재검토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받은 이들의 치유를 도울 것을 다시 확인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 공동체 내 신뢰와 조화를 회복해가는데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교회 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 미국가톨릭교회주교회의의 일원인 우리는 본 헌장에 일련의 실천적이며 사목적인 조치들을 약속하며, 각자의 교구에서 준수할 것을 결정한다.

## 미성년자 성적 학대 피해자/생존자의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 제 1조.

교구는 피해자/생존자와 그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하며, 그들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교회의 우선적 임무는 치유와 화해이다.

각 교구는 미성년자로서 교회 봉사직에 있는 사람에 의해 성적학대를\* 받은 모든 피해자를, 사건 발생의 시기에 관계없이, 보살피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는 상담, 영적 도움, 후원자 그룹, 피해자와 교구 간에 합의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목적 노력을 통해 교구장 주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그들과 만나, 그들이 겪은 일들과 우려와 관심사를 인내심과 연민을 가지고 경청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가톨릭교회 추기경단과 주교회의 임원들에게 하신 연설(2002. 4.23)에서 표현된 “깊은 연대감과 관심”을 함께 나누도록 제안해야 한다.

### 제 2조.

교구는 미성년자 성적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또 교구는 성직자나 교회직원에게 의해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을 위한 즉각적인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신고절차양식은 미사통상문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인쇄하여 비치하고, 매년 공지하도록 한다.

교구는 교구장 주교에게 비공개 자문역을 담당하는 평가위원회(review board)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평신도로 하며, 교구의 고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참조: 「사제와 부제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 신고처리에 대한 교구정책을 위한 필수규범」 [*Essential Norms for Diocesan/Eparchial Policies Dealing with Allegations of Sexual Abuse of Minors by Priests or Deacons*] 제 5조, 2002). 위원회는 교구장 주교가 미성년자 성적 학대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성직자의 성무 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언을 한다. 위원회는 미성년자 성적학대 처리 정책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재검토 한다. 또한 위원회는 본 사안들에 대해 과거의 상황과 예측되는 상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건들과 관련한 모든 대응의 전반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 제 3조.

교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 관계자들에게 비밀을 전제로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없다. 단 피해자/생존자가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합의문에 피해자측이 요청하였음을 명시한 후 가능하다.

## 미성년자 성적 학대 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보장하기 위하여

### 제 4조.

교구는 미성년자 성적학대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법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교구는 미성년자 성적학대 신고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지역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교구는 피해자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사건신고에 대해 사법당국에 협조해야 한다.

교구는 모든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조언하고, 그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 제 5조.

우리는 “사제직과 수도자 삶에는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하신 미국가톨릭교회 추기경단과 주교회의 임원들에게 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을 재확인한다.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학대는 보편교회법으로 범죄행위이다 (CIC, c. 13995 §2; CCEO, c. 1453 §1). 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관할권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Motu proprio,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AAS, 93, 2001) 속해있다. 미성년자 성적학대는 미국의 모든 사법관할지역에서도 범죄행위이다.

교구정책으로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단 한번의 미성년자 성적학대 행위\* 대해서도 해당 사제나 부제를 영구히 교역활동에서 제외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제직을 발탁할 수 있다. 본 헌장이 추구하는 목적 정신에 따라 해당사제나 부제는 향후 재발 방지와 그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사제나 부제가 단 한번의 미성년자 성적학대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교역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보편교회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적학대 혐의를 받은 사제나 부제에게는 조사기간 동안 무죄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하며, 그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 변호사와 교회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한다. 만약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었으면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구는 본 조항을 실행하는데 보편교회법과 미국주교회의에서 인준한 규범이 제시하는 필요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 6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성직자, 유급직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역행위와 적절한 경계에 대한 교구강령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잘 홍보하도록 한다.

제 7조.

교구는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학대에 관해 일반 대중과의 의사소통에서는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보호 한도 내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교역상 부당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본당이나 교회공동체에게 알릴 때는 특히 이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 8조.

미국가톨릭주교회의의 권한으로 성적학대 특별위원회의(Ad Hoc Committee on Sexual Abuse) 운용의 의무조항이 갱신되면서, 동 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로 현재 개편되어 주교회의 상설위원회가 되었다. 위원회 구성원은 미국 내 모든 주교좌 지역(Episcopal region) 대표들이 포함되며, 신입 위원을 시차를 두어 선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노력에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동 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 관련 사안 전반에 걸쳐 주교회의에 조언을 하게 되며,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의 계획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등을 감독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보호국과 전국평가위원회의 노력을 통합, 조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 수립과 제안들을 주교회의에 제출한다.

제 9조.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은 주교회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실무담당 사무국이다. 보호국은 교구 내 인구, 지역범위, 재정상태와 기타 자원들을 고려하여 교구의 “안전 환경” 프로그램 실행을 돕고, 어린이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구직원 양성과 훈련을 돕는다.

보호국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현장이 제시하는 강령 실행 및 유지의 진척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매년 실시하는 감사과정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방법과 범위, 경비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권고로 행정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에는 감사결과 현장이 요구하는 기대치와 실행조항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교구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한다.

보호국 사무국장은 주교회의의 보좌진의 일원으로 주교회의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사무국장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와 전국평가위원회에 보호국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제 10조.

교구와 전국차원에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특히 평신도들은 교회 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2002년 주교회의에 의해 설립된 자문기관인 전국평가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평가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이 제출한 각 교구의 현장 실행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와 보고서에서 드러난 일단의 제안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내용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승인여부와 보고서 출판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주교회의 의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새 위원영입에 대해 주교회의 의장에게 조언을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주교회의 행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교회의 의장이 임명하며, 주교회의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의무가 있다. 주교회의 의장은 위원 후보자를 접촉하기 이전에 후보자의 소속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주교회의 정관과 내규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위원회가 작성하여 행정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업무지침에 따라 활동한다. 평가위원회 업무지침은 위원회의 목적과 책임, 임원, 임기, 주교회의 활동보고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 모든 정책과 최선의 실행방안들에 대해 조언한다. 평가위원회와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매년 몇 차례 합동회의를 갖도록 한다.

평가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국의 업무를 평가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교구를 위한 자원개발에 보호국을 돕는다.

평가위원회는 최근 사태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 작업을 감독 한다. 평가위원회는 연구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집된 자료와 초기결과에 대한 의견을 어린이 청소년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11조.

주교회의 의장은 우리 주교들이 전 미국교회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담은 본 개정판 헌장을 교황청에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의장은 본 헌장의 실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교황청과 나누도록 한다.

##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 제 12조.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가톨릭교회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안전 환경”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부모, 교역자, 교육자, 자원봉사자,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와 사법당국, 교육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하여 실행되도록 한다. 교구는 성직자와 어린이와 관련하여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행동윤리강령을 성직자들과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 13조.

교구는 교구 관할 내 공동체에서 사목하고 있는 교구입적 사제와 부제, 비입적 사제와 부제 모두의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또한 현장 감독이 없이 미성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교구, 본당, 학교 직원과 유급직원 및 자원봉사자 모두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신원조회는 법집행기관과 지역의 관계기관을 자원제공처로 이용하도록 한다. 추가로 교구는 사제서품 후보자의 서품여부를 결정하는데 철저한 사전심사와 적합한 평가기술을 사용하도록 한다. (cf. National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Program of Priestly Formation*, 2006, no. 39)

### 제 14조.

미성년자 성적학대 행위를 저지른 성직자의 은퇴를 포함한 주거지 이동을 위한 전출은 규범 (Essential Norms) 제 12조에 준한다. (cf. Propose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r Assignment of Clergy and Religious, adopted by the USCCB, the Conference of Major Superiors of Men, the Leadership Conference of Women Religious, and the Council of Major Superior of Women Religious in 1993)

### 제 15조.

교구장 주교와 수도회 장상 간에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의 대표 2인이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장상연합회의 요청이 있을 시 보호 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장상연합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교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회 사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교구장 주교와 해당 수도회 장상 혹은 그 대리인들은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 협의를 한다.

### 제 16조.

우리 사회 안의 미성년자 성적학대 문제에도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종교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및 이 분야의 연구단체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다.

제 17조.

우리는 미국추기경단과 주교회의 임원들이 참석한 2002년 4월 로마회의에서 권고한 대로 교구와 수도회의 신학교에 대한 교황청 순시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 주교는 각 교구에서나 전국 주교회의에서 해당 위원회들을 통하여 초기 사제양성교육과 지속적인 사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Pastores Dabo Vobis*, the *Program of Priestly Formation*, and the *Basic Plan for the Ongoing Formation of Priests*에서 제시된 기준에 기초한 신학생과 사제들을 위한 순결과 독신생활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급히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는 사제, 부제, 그리고 신학생들이 자신의 성소의 삶을 충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지원을 계속해 갈 것이다.

그리고 교구 내 모든 이들, 특히 피해 당사자들과 미성년자 성적학대 문제가 자신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한 공동체의 모든 이들 간의 화해를 위해 형제사제들과 부제들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 결론

우리가 3년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교형자매들의 깊은 신앙심과 사제직의 견실함 안에서 현재의 위기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기꺼이 받아 들이고 또 해결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제와 부제는 성실히 신자들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그들은 신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신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단언하는 바이다. 우리 주교들 또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명예와 안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아갈 것이다.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치유와 화해와 하느님께 저지른 커다란 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입혀진 깊은 상처에 대한 보속의 행위이다. 기도와 보속을 함께 연결하는 것은 바로 삶의 성화로의 부르심이며, 주교와 사제들이 죄를 멀리하고 삶의 성화 안에서 성장하는 증명된 길 위에 자신들을 확고히 서게 할 수 있도록 교구장 주교의 배려를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참회 안에서 1차 발표된 헌장을 통해 했던 우리의 서약을 갱신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엄숙히 서약한다.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에 투신할 수 있는 자들만을 사제로 서품할 것이며, 합당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명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성직자에 의해 성적학대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와 화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위의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행해왔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해오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

본 헌장은 미국 내 모든 교구를 위해 출판된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5년 내로 전국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본 헌장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 (SST) 제 4조 1항에 의거하여, 본 헌장의 목적이 정의하는 성적학대 (sexual abuse)는 교회법전 제 1395조 2항에 따라 십계명 중 제 6계명에 위배되는 성직자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범해진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교회법전 제 1395조 2항: “십계명 중 제 6계명을 거슬러 성직자가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1994년 이래 미국에서는 성년의 나이로 18세를 인정해오고 있어 SST에 나이가 상향조정 되었음]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외관상으로, 객관적으로 중죄행위로 판명이 어려울 때는 윤리신학자들의 글을 참조하거나 명망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법하게 얻어야 한다 (Canonical Delicts Involving Sexual Misconduct and Dismissal from Cleric State, 1995, p. 6). 교구장 주교는 자격 있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신고된 행위의 경중을 판단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헌장은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성적학대 특별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2005년 주교회의 총회에서 인준되었으며 아래의 서명인에게 그 출판이 승인되었다.

Msgr. William P. Fay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사무총장